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 립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27일에서 2023년 1월 27일까지 1년 연장하고, 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을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또는 연구사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2022년 1월 27일”을 “2023년 1월 27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관련)

1. 수목원조성사업단(존속기한: 2023년 1월 27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2년 1월 27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수목원조성사업단을 둔다.		제35조(수목원조성사업단 및 정원) ① -----		
② ~ ⑤ (생략)		----- <u>2023년 1월 27일</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3